

7.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07년 6월 11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관리실장)
- 회부일자 : 2007년 6월 11일
- 상정 및 의결
  -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2007년 7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동구 송정동 외 13개 지역(4,704,090㎡)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동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송정동, 신용동, 신무동, 미곡동, 백안동 등 14개 법정동의 4,704,090㎡ 지역이 2007년 5월 10일 자연환경지구로 편입·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 2007-81호)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21일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95호)됨에 따라 이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으로 변경·고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세 조례」 제101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추가 등의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세의 부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온 지역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임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당해지역이 2007년 5월 10일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결정·고시되고, 2007년 5월 21일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고시되는 등 용도지역의 변경이 5월중에 이미 확정되어 본 동의안의 처리가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0회 임시회(5. 8 ~ 5. 23)에서 본 안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가 2007년 5월 30일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에 대한 고시를 먼저 실시하고 사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동의안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세 조례」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지정 및 변경고시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그 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세의 부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온 지역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써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고시를 위해 다소 불가피한 경우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절차의 미이행은 물론, 사전고시의 불가피성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설명을 거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및 변경고시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의견은?	○사후동의 요구는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것임. 부서간 업무협조 부족으로 착오가 있었으며 향후, 업무연찬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답 변
<p>○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 지정·고시로 일부 부과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 불이익에 대해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p>○본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부결 후의 처리절차는?</p> <p>○녹지지역중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른 이 지역 주민들이 입게될 불이익과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p>	<p>○관련 구청 및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p> <p>○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동의안 의결 절차후 새로이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p> <p>○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음.</p>

5. 토론사항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세조례 제101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